

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(조승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3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8.

발 의 자 : 조승환 · 김승수 · 이성권
유용원 · 곽규택 · 인요한
권영진 · 김재섭 · 김성원
서지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최근 공무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지급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또한, 악성민원이나 재난 트라우마로 인한 공무원 재해가 이슈로 부각되는 등 직무 스트레스 · 업무 중압감 · 과로 등의 새로운 재해요인도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직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공무원 재해에 관하여는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이 제정되어 있으나, 그 중 재해의 예방에 관해서는 1개조의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여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

체계를 새롭게 구조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법의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상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, 건강안전담당관, 건강지도관, 안전지도관, 건강관리의 등을 지정·위촉하도록 하고, 건강안전책임관 및 건강안전담당관에게 건강지도관, 안전지도관 및 건강관리의 등의 조언 등을 따라 조치하도록 함(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).
- 마. 기관별로 조직·예산,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, 재발방지 대책,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함(안 제13조).
- 바. 인사혁신처에 중앙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건강·안전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사항을

지원하도록 하며,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는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을 설치하여 건강진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 및 제16조).

사. 인사혁신처가 5년 단위의 공무원 건강안전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(안 제17조 및 제19조).

아. 인사혁신처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수준을 평가하도록 함(안 제21조).

자. 공무원의 직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찾아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(안 제23조).

차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일반건강검진 및 심리검사, 특히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업무상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).

카. 건강안전책임관은 중대한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직무휴지를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승인하고, 공무원에게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혁신처가 심리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8조 및 제29조).

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공무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 수립과 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주관)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.

② 인사혁신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2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
3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·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
4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
5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·협력
6. 그 밖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사항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
 2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
 3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
 4. 그 밖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.

제5조(공무원의 의무) 공무원은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하며, 제13조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6조(건강안전 재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(財源)은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9조에 따른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에서 지원한다.

1.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
2. 제34조에 따라 「공무원연금법」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

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

3. 그 밖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분담한다.

제7조(건강안전책임관) ① 국가기관의 장(국회는 국회사무총장, 법원은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, 정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해당 기관(소속 기관 등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(이하 “건강안전책임관”)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건강안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.

1. 제13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
2. 제19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건강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
3. 제22조에 따른 기관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
4. 제23조에 따른 기관의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
5.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의 실시, 지원 및 조치
6. 제28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긴급직무휴지에 관한 사항
7. 제30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건강안전교육

8. 그 밖의 소속 공무원 건강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

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책임관의 자격·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건강안전담당관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조하여 해당 기관의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(이하 “건강안전담당관”이라 한다)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·자격·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건강지도관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(이하 “건강지도관”이라 한다)을 배치한다.

②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제31조에 따른 공직건강지도사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지도관의 업무·자격·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안전지도관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

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(이하 “안전지도관”이라 한다)을 배치한다.

②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안전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지도관의 업무·자격·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건강관리의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의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, 「의료법」 제2조에 따른 의사를 건강지도관으로 둔 경우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건강관리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검사결과 등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업무 배치, 업무 전환 또는 긴급직무휴지 등 소속 공무원의 건강 확보 조치에 관한 지도
2. 공무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도

3.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

③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건강관리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관리와의 자격·임명·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건강지도관 등의 지도·조언) 건강안전책임관과 건강안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을 포함한다)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·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제9조에 따른 건강지도관
2. 제10조에 따른 안전지도관
3. 제11조에 따른 건강관리의

제13조(건강안전관리규정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기관 내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

2. 제23조에 따른 위험요인 진단과 조치의 방법·절차·시기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

3. 공무원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14조(건강안전협의회)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,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건강안전협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.

③ 건강안전협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5조(건강안전심의위원회) ①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·대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“헌법기관”이라 한다) 및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제16조에 따른 공직건강안전지원단의 설치·운영

2. 제17조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심의

3. 제19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관한 시행계

회의 심의

4. 제28조에 따른 긴급직무휴지 직권승인에 대한 심의

5. 공무상 재해(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조,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조사

6. 그 밖에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

②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(국·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)이 아닌 사람으로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

④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(이하 “대통령령등”이라 한다)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 또는 건강관리의로 한다.

⑤ 헌법기관 소속의 건강안전심의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소속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사무처의 조직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.

제16조(공직건강안전지원단) ① 공무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각 권역에 공직건강안전지원단(이하

“지원단”이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공무원의 신체·정신 건강에 관한 검진 및 상담
2. 공무원의 신체·정신 건강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3. 공상(公傷) 공무원의 복귀 및 재활에 대한 상담과 지원
4.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지원
5. 공무원의 경력 개발·경력 경로 설계 등에 대한 상담
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원단에 제11조에 따른 건강관리의 및 제31조에 따른 공직건강지도사를 둘 수 있다.

④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조직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기본계획 등의 수립·시행)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3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4. 공무원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

5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관한 연도별계획(이하 “연도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실태조사) ①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실태조사 항목, 주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위배되는

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국회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게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20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연도별계획의 수립·시행, 제18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1조에 따른 건강안전 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1조(건강안전 수준 평가) ①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을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수준을 평가(이하 “건강안전 수준 평가”라 한다)한다. 다만,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, 그 이행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안전 수준 평가의 결과 및 제

2항에 따른 권고 이행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④ 인사혁신처장은 건강안전 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 수준 평가의 기준·방법·절차 및 이행 결과 공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공무상 재해 현황 통계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·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(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공무상 재해로 이어질

수 있는 위험요인을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24조(건강검진 수검 지원 및 관리)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수검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5조(업무상건강검진의 지원 등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(이하 “업무상건강검진”이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검진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연구·통계분석·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업무상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와 건강장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업무상건강검진을 지원하거나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6조(심리검사의 지원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

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심리검사를 지원하거나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7조(검진결과 목적 외 사용금지 등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검진·검사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

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4조부터 제26조에 따른 관리 현황이나 조치 결과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8조(긴급직무휴지)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업무를 지속할 시 중대한

공무상 재해가 급박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

② 건강안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내용에 관하여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건강관리과의 의견을 들어 해당 공무원과 소속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병가(이하 “긴급직무휴지”라 한다)를 신청·승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긴급직무휴지를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건강안전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긴급직무휴지를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.

④ 건강안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긴급직무휴지를 직권으로 승인한 경우, 긴급직무휴지 직권 승인 필요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해당 기관에 건강안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건강안전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이 긴급직무휴지한 경우 건강관리과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담 또는 의사의 진료를 제공하고, 기타 인사 조치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⑥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직무휴지 중인 공무원이 건강상태를 회복하였다는 의사 또는 건강관리과의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

⑦ 소속기관의 장은 긴급직무휴지 후 복귀한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29조(긴급통합지원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상 재해 조사, 심리안정지원 등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0조(건강안전교육) ①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직무와 관련한 건강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제7조에 따른 건강안전책임관
2. 제8조에 따른 건강안전담당관
3. 제9조에 따른 건강지도관
4. 제10조에 따른 안전지도관

5. 제11조에 따른 건강관리의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안전교육의 시간·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1조(공직건강지도사의 직무) 공직건강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직무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지도
2. 제25조 및 제26조의 결과에 따른 인사상 사후관리 방안 지도
3. 업무재배치 및 업무재조정 등에 관한 지도
4. 조직 또는 개인의 고충 상담 보조 및 필요사항에 대한 조언과 지원
5.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방안 지도
6. 제30조에 따른 건강안전교육
7. 그 밖에 공무원 건강안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32조(공직건강지도사의 자격·시험 및 등록) ①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직건강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건강과 관련된 근무경력 또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

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④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⑥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직무를 시작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이수한 후 인사혁신처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, 시험방법,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, 자격시험의 집행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(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)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연계 및 공유를 위하여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 시스템(이하 “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

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수집·보유·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업무의 위탁)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1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3조(건강안전 재원에 관한 적용례) 제6조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할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,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”를 “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할 및 직무복귀를 지원함으로써”로 한다.

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예방 체계 및 그에 필요한 활동 지원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48조제2항 중 “재해예방사업 및 재할·직무복귀”를 “재할·직무복귀”로 한다.

제49조의 제목을 “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재해보상부담금”을 각각 “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48조제1항”은 “제48조제1항 및 「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」 제6조제2항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재해보상부담금”을 “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”으로 한다.

제50조 중 “재해보상부담금”을 “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”으로 한다.

제61조제1항제9호 중 “재해보상부담금”을 “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”으로 하고 제61조제3항 중 “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조제2항에“를 ”제47조제2항에“로 한다.